

『2026년 경기도 양자-반도체 팹 융합활용 R&D 지원 사업』 참여기관(기업·대학) 추가 모집 공고

『2026년 경기도 양자-반도체 팹 융합활용 R&D 지원 사업』을 다음과 같이
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7월 7일

한국나노기술원장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경기도에 구축된 한국나노기술원 및 성균관대학교의 양자-반도체 팹 시설에 이용료를 일정 부분 지원함으로써 초기 양자 반도체 융합산업 신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산학 연구자의 기존(정부 및 지자체 또는 자체) R&D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함.

□ 사업기간 : 2026. 4. ~ 11.

□ 지원대상 : 경기도 소재 양자·AI·반도체 관련 중소·중견기업 및 대학

□ 지원규모

구 분		총 사업비	자부담금(현금)	도 지원금	선정 수
양자-반도체 팹 융합활용 R&D 지원	기업	36백만원 이상	6백만원 이상	30백만원	6개社
	대학	33백만원 이상	3백만원 이상		

※ 사업비는 협약 기간 내에 전액 소진(아월 및 양도 불가)

2. 신청자격

□ 경기도 소재 양자-AI·반도체 관련 중소·중견기업 및 대학(소속 연구자)

※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(본사 또는 사업장, 대학은 본교/분교 포함), 공장등록증명서,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

3. 사업내용 및 추진절차

□ 사업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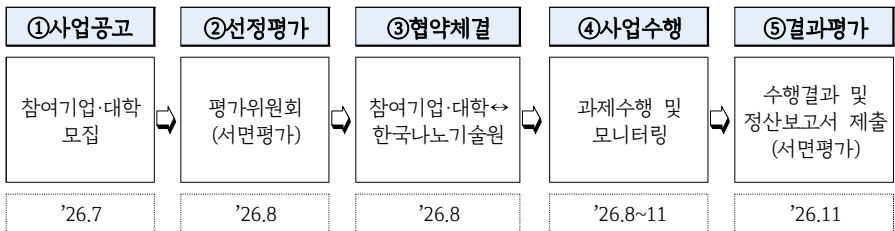
- (양자-반도체 팹 융합활용 R&D* 지원) 양자-반도체 융합분야 상용화 기술 개발 촉진 및 도내 산업체 및 대학의 연구자들에게 연구 능력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가 구축한 양자-반도체 팹의 이용료 지원

* 양자-반도체 팹을 활용한 단위공정 및 모듈공정, 일괄공정, 시험분석, 성능평가 등 R&D

- (활용범위) 연구시설 및 장비이용료 (한국나노기술원 및 성균관대 양자-반도체 팹 이용료)

※ 사업 신청 시 팹 서비스 견적서 및 계획서 필수 제출(성균관대 팹의 기업 활용 시 해당 팹에 사전 문의)

□ 추진절차



※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·변경 될 수 있음.

4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□ 신청기간 : 2026년 7월 7일(화) ~ 7월 24일(금) 16:00까지

※ 이후 잔여 예산 기준으로 추가모집 할 수 있음

□ 신청서류 :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[붙임] 참조

□ 신청방법 : 신청서류 E-mail(heesuk.han@kanc.re.kr) 제출

※ 7.24(금) 16시 도착분에 한함

□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등 문의

주관기관	전 화	E-mail
한국나노기술원 경기도 양자AI융합기술센터	031-546-6531	heesuk.han@kanc.re.kr

※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, 가급적 E-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선정방법

□ 평가방법

- 신청기업·대학의 지원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격 검토,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신청서류 서면 평가

□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

- 양자-반도체 펌 융합활용 계획, 기술성(혁신성),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

구분	평가지표	배점
양자-반도체 펌 융합활용 계획 (60)	◦ 양자-반도체 펌 융합활용 R&D 지원 필요성	20
	◦ 기술지원·공정자문 등 협력 계획의 구체성(한국나노기술원 장비·담당자 기재)	20
	◦ 사업비 사용계획 및 양자-반도체 펌 융합활용 계획의 적절성	20
기술성 (20)	◦ 기술 보유 수준 및 기술의 우수성	10
	◦ 기술의 완성도 및 신뢰도, 독창성	10
사업성 (20)	◦ 산업적·학술적 파급효과 및 경기도 산업 연계성	10
	◦ 상용화 가능성, 수요기업 연계 계획, 시장 성장 잠재력	10
합 계		100

-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점수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 평균 70점 이상 득한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(70점 미만 시 탈락)
- 평가 결과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되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음

6. 기타사항

□ 이행보증보험 가입

- ‘양자-반도체 팹 융합활용 R&D 지원’ 선정기업·대학은 도 지원금의 100%에 대해 협약 전 이행(지급) 보증보험증권에 가입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지원금은 선정기관의 지원금 전용 통장으로 先 지급됨(단,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)

※ 발급 수수료는 참여기관 별도 부담(사업비로 불인정)

□ 향후 최종 결과평가 총점 60점 미만인 경우 지원사업비의 50% 환수 조치

□ 지원제외대상

※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, 선정 및 협약 이후에도 지원 제외 사항 확인 시 지원 제외 및 협약이 무효 처리 됨
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및 대학
- 휴·폐업중인 기업 및 대학
-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및 대학
 - 가. 부도기업 및 대학
 - 나. 법정관리, 화의기업(단,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)
 - 다. 개인회생·파산·면책권자(참여기업 및 대학 대표, 과제책임자 등)
 - 라.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‘의견거절’ 또는 ‘부적정한 중소(견)기업 및 대학
 - 마.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(견)기업 및 대학

-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및 공고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-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기업 및 대학, 대표 및 과제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「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 제6조, 「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(2026.1.8.)」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(1회 이상)이 있는 기업 및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 사실 확인 시(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) 사업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
※ 위반사실 적용 법률: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분야 11개 법률

주의사항

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

- ①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배제
- ②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 시)
- ③ 경기도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

